

광주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2가단556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차현영

변 론 종 결 2024. 2. 20.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 가. 소외 D과 피고 B 사이에 소외 D이 피고 B에게 2019. 2. 7.자로 송금한 50,000,000원, 2019. 2. 15.자로 송금한 1,000,000원, 2019. 3. 18.자로 송금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소외 D과 피고 C 사이에 소외 D이 피고 C에게 2019. 1. 21.자로 송금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61,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소외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외 D이 피고 B에게 최종적으로 합계 61,000,000원을 송금할 무렵인 2019. 3. 18. 당시 소외 D의 적극재산은 합계 243,876,473원, 소극재산은 6,000,000원이었으므로 소외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소외 D이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2019. 1. 21.경 소외 D의 적극재산은 합계 440,931,102원, 소극재산은 10,000,000원이었으므로 소외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소외 D의 채무초과 상태)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D의 적극재산 금액에는 원고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 부동산 금액과 수용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선의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들은 선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D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B이 소외 D의 처이고, 피고 C이 소외 D의 사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언급하는 사정들(피고 B은 소외 D에게 송금하거나 소외 D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합계 54,435,163원으로 소외 D으로부터 지급받은 61,000,000원에 거의 상응하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C은 목포시 E아파트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D이 2019. 1.경 보상금을 받은 것이 있어 매매잔금을 주겠다고 하므로 매매잔금으로 70,000,000원을, 그와 함께 대여금으로 30,0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장인인 소외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세히 물어볼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선의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별지